

근로자재해공제사업 업무협정 조인식 체결



▲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은 지난 해 12월 11일 설비건설회관에서 근로자재해공제사업 업무협정 조인식을 체결했다.

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(이사장 이영식)은 지난 해 12월 11일 청담동 설비건설회관에서 이영식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이사장, 김순환 동부화재 대표이사, 윤태원 메리츠화재 기업고객사업총괄전무, 이종문 흥국쌍용화재 대표이사 및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근로자재해공제사업 업무협정 조인식을 체결했다.

근로자재해공제사업은 조합원에게 고용된 근로자(일용직 포함)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그로 인한 조합원의 손해배상책임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지급책임 범위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.

설비조합과 국내 우량 손해보험사인 동부화재, 메리츠화재, 흥국쌍용화재 간의 전략적 제휴는 각자의 핵심역량을 극대화해 상호 Win-Win 하고 상생할 수 있다는 공동목적에 따라 이뤄졌다. 조합은 조합원의 금융비용 절감과 일원화된 조합 서비스 제공으로 조합원의 편익을 제공하게 돼 조합 책임경영실현을 기대하며, 손보사들은 5,500여개에 달하는 설비건설업체 조합원으로 구성된 공제조합의 조직을 영업망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.

현재 조합에서는 손해보험사와 업무제휴(동부화재, 메리츠화재, 흥국쌍용화재)를 통해 공제계약 체결절차 및 보험료 산정, 사후관리 운영 등을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운용체계를 갖추고 있으며, 2008년 1월 1일 부터 조합원사면 누구나 전국 조합지점(영업소) 및 사무실 또는 가정에서 인터넷 망을 활용하여 손쉽게 근로자재해공제증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.

1. 근로자재해공제

○ 사업근거

조합원에 고용된 자의 복지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이 가능함.

- 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(공제조합의 사업) 제1항 제5호
- 조합 정관 제47조 제1항

○ 근로자재해공제란?

조합원사에 고용된 근로자(상용직, 일용직 등)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

우에 그로 인한 조합원의 손해배상책임이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상의 지급책임 범위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보상하여 주는 공제상품.

- ※ 기존 손해보험사에서 취급하던 근재보험가입(사용자배상책임보험)을 조합에서 조합원에 한해 직접 판매해 보험료를 인하할 수 있으며, 보상하는 손해와 사고발생시 보험금(공제금)을 지급하는 모든 업무는 동일함.

○ 운영방법

동부화재, 메리츠화재, 흥국쌍용화재와의 업무협정을 통하여 공제증권발급을 제외한 모든 업무(사고조사, 손해사정, 보험금 지급 등)를 주간사인 동부화재가 직접 조사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음.

2. 보험가입안내

○ 보험가입대상

- 조합에 출자한 조합원이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
-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의거하여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

○ 보험가입시 혜택

개별적으로 보험 가입 할 때보다 약 10% 절감된 보험료 제공.

○ 보험가입방법

지점 방문 및 인터넷 발급 가능.

○ 보험가입서류

구분	공사장별계약	연간포괄계약
가입범위	건설관련 각종 공사(설치포함), 기계기구제작, 제조업 포함	
내용	공사현장 단위로 공제계약 체결	공사계약자 단위로 공제계약 체결
공제기간	공사기간 원칙	1년 원칙
제출서류	① 근로자재해공제계약 청약서(조합양식) ② 공사(하)도급계약서 사본 ③ 공사비내역서 사본(인건비내역포함)	① 근로자재해공제계약 청약서(조합양식) ② 전년도 손익계산서 및 공사(제조) 원가명세서상의 노무비 ③ 산재보험료 보고서 사본
인건비	공사내역서상의 인건비	손익계산서상의 인건비(급여, 상여금),
계산방법	※ 공사내역서에서 확인불가시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표준 노무비율을 적용	공사(제조)원가명세서상의 인건비 ※ 임원급여, 퇴직급여는 제외
공제료 산출방법	공사현장의 인건비 × 공제요율	전체근로자의 연간 총인건비 × 공제요율

3. 보상내용

○ 보상한도액

1인당 1천만원에서 5억원, 1사고당 1천만원에서 10억원으로 하며, 공제기간 중에 사고 횟수와 관계 없이 매 사고에 대하여 보상한도액을 적용

○ 보상내용

-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(지연배상금 포함)
 - 상실수익금 : 후유장애로 인한 장래수의 상실 손해(산재초과분)
 - 향후치료비 : 치료종결 후 인정된 요양비(산재초과분)
 - 위자료 : 본인 및 친족들의 정신적인 손해
- 방어비용(손해배상에 관한 합의금, 소송비용 등)

- 소송비용 : 소송, 조정의 경우 필요비용, 변호사 보수, 소송비용
- 협력비용 : 손해보험사의 요청에 의하여 지출한 제반 비용

○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

- ① 계약자, 피공제자(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)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나 법령위반으로 인한 손해
- ② 근로자의 고의 또는 범죄행위에 의한 손해. 이 경우 그 근로자가 입은 손해에 한함.
- ③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 중에 생긴 손해. 이 경우 그 근로자가 입은 손해에 한함.
- ④ 피공제자의 원수급인, 하도급인 및 그들의 근로자에게 생긴 손해. 그러나 공제계약을 맺을 때에 미리 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공제

료를 받았을 때에는 보상 가능.

- ⑤ 피공제자가 아닌 다른 자연인 또는 법인에 의하여 사실상 고용되어 있는 동안에 생긴 손해
- ⑥ 지진, 분화,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
- ⑦ 전쟁, 침략, 교전, 외국의 무력행위, 혁명, 내란, 테러, 반란, 계엄령선포, 폭동, 소요, 기타 이와 비슷한 사태로 생긴 손해
- ⑧ 핵연료물질(사용된 연료 포함, 이하 같음.)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(원자핵분열 생성물 포함.)의 방사성, 폭발성 그 밖에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
- ⑨ 위 ⑧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
- ⑩ 피공제자와 근로자와의 사이에 손해보상 또는 재해보상에 대한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라 가중된 배상책임
- ⑪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보상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업무상 재해에 대한 배상책임
- ⑫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급부를 행한 보험회사가 구상권의 행사 또는 비용의 청구를 함에 따라 부담하게 된 배상책임
- ⑬ 피공제자의 동거친족에 대한 배상책임
- ⑭ 티끌, 먼지, 석면,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
- ⑮ 전자파, 전자장(EMF)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

4. 보상처리절차

○ 공제사고가 발생한 경우, 보험사에서 사고조사, 손해사정을 통해 피공제자에게 직접 보상처리

- 사고접수 전화 : 1588-0100

- 보험사 : 주간사 : 동부화재해상보험(주)

참여사 : 메리츠화재해상보험(주),
 흥국쌍용화재해상보험(주)

- ① 사고발생 : 조합원사 고용근로자 사고발생
- ② 사고통보 : 조합 또는 보험사에 직접 방문하여 사고접수(근로자재해공제사고 발생통보서 제출)
- ③ 보험금청구서류접수 :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접수(보험사에서 추가 서류에 대하여 요청함) (보험증권사본, 산재 급여지급 확인원, 근로계약서, 공사하도급계약서, 임금대장, 휴유장에 진단서)
- ④ 사고조사(손해사정) : 사고원인과 손해의 인과 관계, 보험가입금액을 고려한 손해액 산정
- ⑤ 가지급금지급 : 보험금지급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경우 가지급금 지급 (예상금액의 50% 지급)
- ⑥ 보험금지급 : 지급할 보증금이 결정되면 10 영업일 이내에 신속히 지급